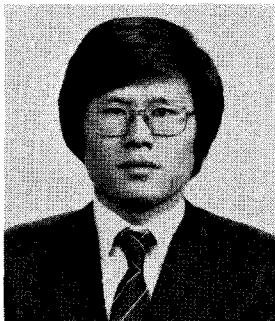


日本트레이드 시크리트의 考察(完)

- 특히 「正競争
防止法」에서의
Trade Secret의 保護 -



尹宣熙

LL. D. Candidate, Faculty of Law,
KOBE UNIVERSITY

I. L. T. 研究會員
東京外國語大學 아시아·아프리카언어
문화 연구소 연구원

目 次

1. 처음에
2. 트레이드 시크리트를 둘러싼 문제와立法化하게 된 동기
- 3.立法경위
4. 트레이드 시크리트의 定義 및 要件
5. 트레이드 시크리트에 관한 不正行爲 형태
6. 善意取得者의 保護
7. 不正行爲 租成物 등의 폐기 請求
8. 不正行爲者の 損害賠償責任
9. 不正行爲에 관한 信用回復措置
10. 不正使用行爲의 使用中止請求權의 消滅時効
11. 經過措置
12. 끝으로.

※ 日本 不正競争防止法 條文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號〉

〈前號에서 계속〉

5. 트레이드 시크리트에 관한 不正行爲 형태
不正競争防止法에서 트레이드 시크리트에
관한 不正行爲는 使用中止請求의 對象이 된다
고 同法 第1條 第3項 第1號에서 第6號까지 열
거되어 있다.

不正行爲의 형태로는 첫째, 훔치거나 속여서
트레이드 시크리트를 입수하고, 그것을 利用하
여 事業을 하거나 他人에게 開市하는 行爲가
있다. 즉, 窃取, 訂欺, 売迫 기타 不正한 수단으
로 營業祕密을 取得하는 행위(「營業祕密의 不
正取得行爲」) 또는 그 취득한 營業祕密을 使用
하는 行爲 혹은 이것을 開市하는 行爲(祕密을
保持하고 있으면서 特定한 者에게 보이는 것을
포함한다)이다.¹⁰⁾ 여기서 「기타 不正한 수단」
이란, 窃取, 訂欺, 売迫 등의 刑罰法規違反에 準
하는 美風良俗에 侵入하여 트레이드 시크리트
를 복사하는 行爲, 盗聽하는 行爲 등을 들 수
있다. 즉, 이것은 刑法에서 「不正한 方法」과 동
일하게 해석하려는 의도이며, 「기타」란 규정을
넣어 확대해석하고 있다.

그 둘째 형태로는, 營業祕密保有者로부터 開市된 營業祕密을 不正競業 기타 不正의 利益을 얻기 위한 行爲를 행할 目的 또는 保有者에게 損害를 입힐 目的으로 그 營業祕密을 使用 · 開市하는 行爲이다.¹¹⁾ 즉, 營業祕密保有者로부터 營業祕密을 나타내보인 從業員, 任員, 라이센시 등에게 主權的 要件인 「不正競爭 기타 不正의 利益을 얻기 위한 行爲를 行할 目的 또는 保有者에게 損害를 입힐 目的」을 附加함으로써 轉職 活動, 營業活動 등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¹²⁾

不正行爲의 셋째 형태로는, 첫째 · 둘째의 不正行爲가 介在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營業祕密을 取得하여 使用 · 開市하는 행위이다. 이는 이 法 第1條 第3項 第1號, 第4號의 不正行爲가 介在하고 있는 것을 알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도 營業祕密을 使用하는 行爲 혹은 이것을 開市하는 行爲로¹³⁾ 不正取得行爲의 介在를 알거나 모르는 것이 중대한 과실이 되는 경우에는 同法 第1條 第3項 第2號와 第5號에 해당된다. 또 營業祕密을 取得한後에 不正行爲가 介在하고 있는 것을 알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對象이 된다.¹⁴⁾

6. 善意 取得者의 保護

去來의 安全을 도모하기 위해 同法 第1條 第3項 各號의 行爲 중에 善意 · 無重過失로 營業祕密을 取得한 者가 當該去來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當該營業祕密을 使用 · 開示하는 行위는 使用中止請求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즉, 同法 第2條 第1項 第5號는 「去來에서 營業祕密을 取得한 者(取得할 때 그 營業祕密에 대한 不正開示行爲를 한 것 또는 營業祕密의 不正取得行爲 혹은 營業祕密의 不正開示가 介在한 것을 모르거나 아는 것에 重大한 過失이 없어 그 營業祕密을 取得한 者에 限한다.)가 그去來로 얻는 權原의 範圍內에서 當該營業祕密을 使用하는 行爲 또는 그것을 開示하는 行爲」라고 규정하고 있다. 不正競爭行爲라고 하는 것은 他人의 營業祕密이 取得되었을 경우라

도 營業祕密을 正當한 去來에 의해 取得한 경우에는 營業祕密 保有者의 利益과 營業祕密을 善意 · 無重過失로 取得한 者의 利益을 保護하고, 去來의 安定性을 確保하는 것과 衡量하는 것이 必要하다.¹⁵⁾

7. 不正行爲 組成物 등의 廢棄請求

使用中止請求는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를 組成한 것, 不正行爲로 인해 생긴 것, 不正行爲 제공으로 인한 設備의 廢棄 등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의 使用中止에 필요한 措置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同法 第1條 第4項에는 「保有者가 前2項의 規定에 따른 請求를 하기 위해서는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를 組成한 것(營業祕密을 化體한 媒體를 포함한다).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에 의해 생긴 것, 또는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의 提供으로 인한 設備의 廢棄, 기타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의 停止 또는 豫防에 必要한 措置를 請求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項의 使用中止請求權者는 營業祕密 保有者이다. 여기서의 「不正行爲 組成物」이란 營業祕密을 化體한 媒體 등이고, 「不正行爲에 의해 생긴 것」이란 營業祕密을 가지고 製造한 製品 등을 말하고, 「不正行爲 提供으로 인한 設備」란 營業祕密을 使用하기 위한 製造設備 등이다. 또,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의 停止 또는 豫防請求」에서는 祕密化體物을 포함한 侵害組成物, 實施物, 設備의 廢棄請求 등 구체적인 不正行爲의 停止, 豫防措置請求를 規定하고 있다.¹⁶⁾

8. 不正行爲의 損害賠償責任

이 法 第1條의 그 第3項에는 故意 또는 過失로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한 行爲로 他人의 營業上 利益을 害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하는 責任을 져야 한다. 다만, 營業祕密의 不正使用行爲에 대한 使用中止請求權의 消滅時効 規定에 따라 同法 第1條 第3項 第1號에서 第6號까지에 규정하는 營業祕密을 사용하는 行爲의 停止 또는 豫防을 請求하는 消滅한 後에 그 營業祕密의 使用行爲로 인한 損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⁷⁾

9. 不正行爲에 관한 信用回復措置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로 他人의 營業上 信用을 侵害한 者에게 法院은 被害者の 請求에 의해, 損害賠償 또는 損害賠償과 동시에 營業上의 信用을 回復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고 同法 第1條의 그 第4項에 規定하고 있다.

즉, 이 項은 部品 또는 營業의 混同行爲 혹은 營業誹謗行爲로 營業上의 信用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金錢賠償請求와 선택적으로 또는 金錢賠償請求와 동시에 信用回復措置를 하는 규정이다. 이 項은 1950年 法律 第90號에 追加된 것을 이번 改正에서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로 追加한 것이다.

10. 不正使用行爲의 使用中止請求權의 消滅時効

이 法에서 營業祕密을 使用한 營業活動이 長期間 계속되는 경우에 使用中止請求權의 行使를 인정하는 것은, 當該事業活動의 停止로 未來關係에 대한 社會的 欲求가 강하기 때문이며, 長期間에 걸쳐 營業祕密의 不正行爲를 방지하고 있는 保有者は 法的保護를 받을 必要性이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理由로 營業祕密의 不正使用行爲에 對한 使用中止請求權은 營業祕密의 不正使用行爲를 행한 者가 그 行爲를 계속하는 경우에, 保有者が 그 사실 및 그 行爲를 행한 者를 안날로부터 3年内에 使用中止請求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時效에 의해 消滅하는 것으로 하고 營業祕密의 不正使用行爲를 행한 者가 그 行爲를 계속하는 경우에 그 行爲의 開始에서 10년이 지난 때라도 같은 것으로 본다.¹⁸⁾ 또 損害賠償規定에 대해서도 같다.¹⁹⁾

11. 經過措置

이 法律 施行前에 不正行爲의 行爲者에게 不測의 損害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原則적으로 法律施行以後에 發生한 不正行爲에 대해

서만 이 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法 施行前에 행한 不正取得行爲나 不正開示行爲라 할지라도, 法律施行後에 새롭게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해 여전히 행해지는 경우에는例外의 으로 이 法이 적용된다.²⁰⁾

12. 끝으로

日本의 트레이드 시크리트는 미국의 通商壓力에 의해 트레이드 시크리트를 研究 檢討하기 시작하여 英 美法條와 大陸法條의 法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특히 大陸法條인 독일의 不正競爭防止法과 유사하다.

이런 日本의 트레이드 시크리트는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트레이드 시크리트를 과잉보호하면 피고용주의 職業選擇의 自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이며 둘째, 裁判公開의 原則을 選擇하고 있는 日本은 트레이드 시크리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셋째, 이런 訴訟節次에 관한 規定이 없다는 것이며, 넷째, 營業祕密 罪에 대한 刑事罰 規定이 없고, 다섯째, 트레이드 시크리트와 特許法간에 問題가 발생한다. 또, 트레이드 시크리트는 無體財產이기 때문에 不正한 行爲로 인한 被害의 損害額 算定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 特許法 第102條 등과 같이 損害額 推定 등의 規定을 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안고있는 트레이드 시크리트가 앞으로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에 주목되고 있다. <♣>

註10. 不正競争防止法 第1條 第3項 第1號.

註11. 上同法 第1條 第3項 第4號, 小野昌延 上同書 304p.

註12. 慶谷 健一, 發明 1990年 9月 20p.

註13. 上同法 第1條 第3項 第2號, 第5號, 第6號.

註14. 上同法 第1條 第3項 第3號, 第6號.

註15. 小野昌延, 上同書 391p.

註16. 小野昌延, 上同書 311p.

註17. 產業構造 審議會, 財產的情報部會의 報告書 紹介.

發明 1990年 8月號 39p.

註18. 上同法 第3條의 2.

註19. 上同法 第1條의 2 第3項 단서.

註20. 上同法 附則 第2條.

※ 日本의 不正競争防止法

第1條(不正競争行爲의 停止請求權)

①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는者가 있어 이로 인하여 營業上 利益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者は 그 行爲를停止하도록請求할 수 있다.

1. 이 法이 施行되고 있는 地域內에 널리 認識된 他人의 姓名 · 商號 · 商標 · 商品의 容器, 包裝 기타 他人의 商品임을 나타내는 表示와 同一 또는 類似한 것을 使用하거나 또는 이것을 使用한商品을 販賣 · 擴布 혹은 輸出하여 他人의 商品과 混同을 일으키게 하는 行爲

2. 이 法이 施行되고 있는 地域內에 널리 認識된 他人의 姓名 · 商號 · 標章 기타 他人의 營業임을 나타내는 表示와 同一 또는 類似한 것을 使用하여 他人의 營業上 施設 또는 活動과 混同을 일으키게하는 行爲

3. 商品이나 그 廣告에 또는 公衆이 알 수 있는 方法으로 去來上의 書類 또는 通信에 허위의 原產地 表示를 하거나 이러한 表示를 한商品을 販賣 · 擴布 또는 輸出하여 原產地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行爲

4. 商品이나 그 廣告에 또는 公衆이 알 수 있는 方法으로 去來上의 書類 또는 通信에 그商品이 產出 · 製造 또는 加工된 地域以外의 地域에서 產出 · 製造 혹은 加工된 듯한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表示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表示를 한商品을 販賣 · 擴布 또는 輸出하는 行爲

5. 商品이나 그 廣告에 그商品의 品質 · 内容 · 製造方法 · 用途 또는 數量에 관하여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表示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表示를 한商品을 販賣 · 擴布 또는 輸出하는 行爲

6. 競爭關係에 있는 他人의 營業上 信用을 害할 허위의 事實을 陳述하거나 또는 流布하는 行爲

② 1900年 12月 14日 브뤼셀에서, 1911年 6月 2日 워싱턴에서, 1925年 11月 6日 헤이

그에서, 1934年 6月 2日 런던에서, 1958年 10月 31日 리스본에서, 1967年 7月 14日 스토클롬에서 改正된 產業財產權의 保護에 관한 1883年 3月 20日 파리條約의 同盟國(이하 「同盟國」이라 한다)에서 商標에 관한 權利(商標權에 상당하는 權利에 限한다. 이하 같음)를 가진 者나 그의 代理人 혹은 代表者 또는 代理人 혹은 代表者인 者가 正當한 理由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當該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의 승낙없이 當該權利에 관한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를 同一 혹은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거나 또는 이런 것을 使用한 同一 혹은 類似한 商品을 販賣 · 擴布 또는 輸出 하는 者에게 그 行爲를停止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代理人 또는 代表者인 그 行爲를 開示한 날로부터 1年以內에 代理人 또는 代表者가 아닌 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祕密로 管理하고 있는 生產方法 · 販賣方法 그의 事業活動에 有用한 技術上 또는 營業上의 情報로서公然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하 「營業祕密」이라 한다)을 保有하는 事業者(이하 「保有者」라 한다)는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이하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하려는 者가 있어 그 营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로 인하여 營業上 利益을 害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营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의停止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1. 窃取, 詐欺, 脅迫 그외의 不正한 수단으로 營業祕密을 取得하는 行爲(이하 「營業祕密의 不正取得行爲」라고 한다) 또는 그取得한 營業祕密을 사용하는 行爲 혹은 이것을 開示하는 行爲(祕密을 保持하면서 特定한 者에게 보이는 것도 포함한다. 이하 같음)

2. 그 營業祕密에 대해, 營業祕密을 不正하게 取得하는 行爲가 介在한 것을 알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것에 重大한 過失이 있어 營業祕密을 取得하는 行爲 또는 그取得에 관한 營業祕密을 使用하는 行爲 혹은 이것을 開示하는 行爲

3. 營業祕密을 取得한 후에, 그 營業祕密에 대해 營業祕密을 不正하게 取得하는 行爲가 介在한 것을 알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것에 重大한 過失이 있어 當該 營業祕密을 使用하는 行爲 또는 이것을 開示하는 行爲
4. 保有者가 開示한 營業祕密을 不正한 競爭 기타 不正한 利益을 얻기 위한 行爲를 하거나 保有者에게 損害를 가할 목적으로 使用하는 行爲 또는 그 목적으로 이것을 開示하는 行爲
5. 그 營業祕密에 대해 營業祕密을 不正하게 開示하는 行爲(前 號에 규정한 開市行爲 및 祕密을 지켜야 할 法律上義務를 違反하여 營業祕密을 開市하는 行爲를 말한다. 이하 같음)인 것 또는 營業祕密을 不正하게 開示하는 行爲가 介在한 것을 알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 重大한 過失이 있어 營業祕密을取得하는 行爲 또는 그取得한 營業祕密을 使用하는 行爲 혹은 이것을 開示하는 行爲
6. 營業祕密을 取得한 後에, 그 營業祕密을 不正하게 開示하는 行爲인 것 혹은 營業祕密을 不正하게 開市하는 行爲가 介在한 것을 알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것에 重大한 過失이 있어 當該 營業祕密을 使用하는 行爲 또는 이것을 開示하는 行爲
- ④ 保有者는 前項의 規定에 의해請求를 할 때는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를組成한 것(營業祕密을 化體한 媒體를 포함한다).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로 인해 생긴 것 또는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가 제공된 設備의 廢棄 기타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의停止 또는豫防에 필요한措置를請求할 수 있다.

- 第1條의 2(不正競爭行爲者의 損害賠償責任)**
- ① 故意 또는 過失로 前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者는 이로인해 營業上의 利益이 침해된 者에 대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져야 한다.
 - ② 故意 또는 過失로 前條 第2項의 行爲를 한 代理人 혹은 代表者, 또는 當該 行爲

開市日로부터 1年以內에 代理人 혹은 代表者였던 者는 이로 인해 營業上의 利益을 해친 同項의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에 대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져야 한다.

- ③ 故意 또는 過失로 他人의 營業上 利益을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로써 해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져야 한다. 다만, 第3條의 2의 규정에 의해 前條 第3項 各號에 규정한 營業祕密을 使用하는 行爲의停止 또는豫防을 請求할 權利가 消滅한 後에 그 營業祕密을 使用하는 行爲로 인해 생긴 損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前條 第1項 第1號 혹은 第2號 혹은 同條 第2項의 行爲 또는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로 인해 他人의 營業上 信用을 해친 者 또는 同條 第1項 第6號의 行爲를 한 者에게는, 法院은 被害者가 請求할 경우, 損害賠償으로 대신하거나 또는 損害賠償과 동시에 營業上의 信用을 回復하는데 필요한措置를命할 수 있다.

第2條(普通 名稱의 適用除外)

- ① 前2條 및 第5條의 規定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行爲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商品의 普通名稱(포도로 生產된 것의 原生地의 地方的 名稱이 普通名稱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혹은 去來上 普通 同種의 商品에慣用이 된 表示를 普通 使用되고 있는 方法으로 使用하는 行爲 또는 이것을 使用한商品을 販賣·擴布 혹은 輸出하는 行爲
2. 去來上 普通 同種의 營業에慣用된 名稱 기타의 表示를 普通 使用되고 있는 方法으로 使用하는 行爲
3. 自己의 姓名을 善意로 使用하는 行爲 또는 이것을 使用한商品을 販賣·擴布 혹은 輸出하는 行爲
4. 第1條 第1項 第1號 혹은 第2號에 언급한 表示가 이 法 施行地域內에 널리 認識되기以前부터 이것과同一 혹은 類似한 表示를 善意로 使用한 者 혹은 그者로부터 營業과 함께 그 表示의 使用을 承繼한 者로써 그

表示를 使用하는 行爲 또는 이것을 使用한商品을 販賣·擴布 혹은 輸出하는 行爲

5. 去來에 의해 營業祕密을 取得한 者(取得할 때 그 營業祕密에 관한 營業祕密이 不正開示 行爲 또는 營業祕密의 不正取得行爲 혹은 營業祕密의 不正開示行爲가 介在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 重大한 過失이 없이 그 營業祕密을 取得한 者에 限한다)가 그去來에 의해 얻은 權原의範圍 内에서 當該營業祕密을 使用하는 行爲 또는 이것을 開示하는 行爲

6. 前項 第3號 또는 第4號에 언급한 行爲를 한 者가 있어 이것으로 인하여 營業上 利益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商品 또는 營業上의 施設 혹은 活動의 混同을 방지하는 적당한 表示를 불일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商品을 販賣·擴布 또는 輸出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條(外國人에 대한例外)

同盟國에 속하는 者 以外의 外國人으로 이法施行의 地域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가 없는 者는 條約 또는 이에 準하는 것에 別段의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第1條, 第1條의 2 및 前條 第2項은 請求할 수 없다.

第3條의 2(停止,豫防請求의時效)

第1條 第3項의 規定에 의거한 同項各號에 規定한 營業祕密을 使用한 行爲의停止 또는豫防을 請求할 權利는 그 行爲를 하는 者가 그 行爲를 계속하는 경우 이로 인해 營業上 利益을 해칠 우려가 있는 保有者가 그事實 및 그 行爲者를 알았을 때부터 3年間 이를 行事하지 않을 때는 時效로 인해 消滅한다. 同項各號에 規定한 營業祕密을 使用하는 行爲를 한 者가 그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그 行爲 開示日부터 10年을 經過하여도 마찬가지다.

第4條(外國紋章 등의 使用制限)

① 外國의 國家의 紋章, 國旗 기타 徽章으로

主務大臣이 指定하는 것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은 그 國家의 當該官廳의 許可 없이 商標로서 使用한商品을 販賣 혹은 擴布할 수 없다.

- ② 前項의 紋章은 그 國家의 當該官廳의 許可 없이商品의 原產地를 誤認하게 하는 方法으로 去來上 그것을 使用하거나 또는 그것을 使用한商品을 販賣 혹은 擴抱할 수 없다.
- ③ 外國 政府의 監督用 또는 證明用의 印章 또는 記號로서 主務大臣이 指定하는 것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은 그 國家의 當該官廳의 許可 없이 그것과 同一 또는 類似한商品의 商標로서 使用하거나 또는 그것을 私用한商品을 販賣 혹은 擴布할 수 없다.
- ④ 日本語의 紋章, 旗章 기타 徽章 또는 政府의 監督用 혹은 證明用의 印章 혹은 記號使用的許可를 當該官廳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外國의 紋章, 旗章 기타 徽章은 政府의 監督用 혹은 證明用의 印章 혹은 記號와 同一 또는 類似한 경우라 하더라도 前3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않는다.

第4條의 2(國際機關의 紋章 등의 使用制限)

同盟國이 加入한 政府間 國際機關의 紋章, 旗章 기타의 徽章, 略稱 또는 名稱으로서 主務大臣이 指定한 것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은 當該國際機關의 許可 없이 當該國際機關과 關係가 있는 것 같이 誤認을 일으키는 方法으로 그것을 商標로서 使用하거나 그것을 商標로 使用한商品을 販賣 혹은 擴布할 수 없다.

第5條(罰則)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以下の懲役 또는 50万円以下の罰金에 처한다.

- 商品 또는 그 廣告에 그商品의 原產地, 品質, 內容, 製造方法, 用途 또는 數量에 관하여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허위 表示를 한 者
- 不正한 競爭을 目的으로 第1條 第1項 第1

- 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者
 3. 不正한 競爭을 目的으로 第1條 第1項 第3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者
 4. 前 2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5條의 2(兩罰 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的 業務에서 前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 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6條(無體財產權行使行爲의 適用除外)

第1條 第1項 第1號 및 第2號 또는 第2項, 第1條의 2 第1項, 第2項 및 第4項, 第4條 第1項 내지 第3項, 第4條의 2 및 第5條 第2號의 規定은 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 또는 商標法에 의한 權利의 行使로 認定하는 行爲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附 則(1990年 6月 29日 法律 第66號)

第1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公布日로부터 起算하여 1年을

넘지 않는 範圍內에서 政令으로 定하는 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이 法律에 의해, 改正後의 不正競爭防止法(이하 「新法」)라 한다) 第1條 第3項 및 第4項 또는 第1條의 2 第3項의 規定은, 이 法律의 施行前에 행한 新法 第1條 第3項 第1號에 규정한 營業祕密의 不正取得行爲 또는 同項 第5號에 規定한 營業祕密의 不正開市行爲에 관해 同項에 規定한 營業祕密에 관한 不正行爲이며, 이 法律의 施行後에 행하여진 것(다음 각호에 언급한 行爲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이 法律의 施行前에開始한 同項 第4號에 規定한 營業祕密을 사용하는 行爲를 계속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新法 第1條 第3項 第1號에서부터 第3號까지, 第5號 및 第6號에 規定하는 營業祕密을 開示하는 行爲
2. 新法 第1條 第3項 第2號 및 第5號에 規定한 營業祕密을 取得하는 行爲 또는 이러한 行爲에 의해 取得한 營業祕密을 使用한 行爲 <♣>

아이디어뱅크 안내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는 產業 및 生活아이디어를 發掘하여 이를 實用化될 수 있도록 關聯企業等에 連繫시킴으로써 汎國民의인 發明風土를 造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뱅크를 開設하였으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對 象 : 產業 및 生活아이디어

◎申請方法 : 直接訪問, 書信 또는 電話

◎接 受 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우편번호 135-090 서울 江南區 三成洞 143-19

◎接受된 아이디어의 處理

○分期別로 審查하여 實用化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關聯企業에 實施斡旋

○特許 · 實用新案 · 意匠으로 設權可能하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出願誘導

○申請接受된 優秀한 아이디어는 綜合審查後 年末에 施賞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